어나드 범어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5-0604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6.13.(금)	2025.06.30.(월)	2025.07.01.(화)	2025.07.02.(수)	2025.07.08.(화)	2025.07.10.(목)~ 2025.07.14.(월)	2025.07.21.(월)~ 2025.07.23.(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방문 예약제 운영 안내

- 어나드 범어는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검수, 공급계약체결 시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예약방법 등은 홈페이지(https://www.anadd.co.kr)를 통해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nadd.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세액	사업주체 부담액	분양계약자 부담액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 5천원	17만 5천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1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6.30.(월)	2025.07.01.(화)	2025.07.02.(수)	2025.07.08.(화)	2025.07.10.(목)~ 2025.07.14.(월)	2025.07.21.(월)~ 2025.07.23.(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0-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본 아파트는 공정률 60% 이후에 분양하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미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점 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신청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과 - 27516호(2025.06.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33층 4개동 총 604세대 [특별공급 78세대(다자녀가구 59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2025000192	01	136.9181	136	136.9181	36.8369	173.7550	82.1896	255.9446	20.4044	93	9	3	12	81	3
	02	139.3956	139	139.3956	37.7855	177.1811	83.6768	260.8579	20.7736	30	3	1	4	26	1
	03	153.8091A	153A	153.8091	40.3019	194.1110	92.3290	286.4400	22.9216	61	6	2	8	53	2
	04	153.9135B	153B	153.9135	40.2182	194.1317	92.3916	286.5233	22.9372	30	3	1	4	26	1
	05	153.8743C	153C	153.8743	39.5680	193.4423	92.3682	285.8105	22.9313	120	12	4	16	104	4
	06	156.0000A	156A1	156.3070	41.2051	197.5121	93.8285	291.3406	23.2939	106	11	3	14	92	2
			156A2	156.0580	42.3615	198.4195	93.6790	292.0985	23.2568						
	07	156.5750B	156B	156.5750	40.7752	197.3502	93.9893	291.3395	23.3338	119	12	4	16	103	4
	08	156.8419C	156C	156.8419	41.5498	198.3917	94.1496	292.5413	23.3736	30	3	1	4	26	1
	09	160.0050	160	160.0050	41.5866	201.5916	96.0483	297.6399	23.8450	2	-	-	-	2	1
	10	168.1895	168	168.1895	43.7830	211.9725	100.9613	312.9338	25.0647	5	-	-	-	5	-
	11	170.2682	170	170.2682	44.4919	214.7601	102.2092	316.9693	25.3745	5	-	-	-	5	1
	12	226.6464P	226P	226.6464	65.7884	292.4348	136.1145	428.5493	33.8065	1	-	-	-	1	-
	13	244.7709P	244P	244.7709	66.6935	311.4644	146.9319	458.3963	36.4773	2	-	-	-	2	-
	합 계									604	59	19	78	526	20

※ 주택공급 시 [주택형] 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의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 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136.9181	139.3956	153.8091A	153.9135B	153.8743C	156.0000A	156.5750B	156.8419C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	3	6	3	12	11	12	3	5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1	2	1	4	3	4	1	19
합 계	12	4	8	4	16	14	16	4	7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타입 (약식 표기)	동 (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1회(30%) 2025.09.25	2회(30%) 2025.11.25	입주지정일
136.9181	136	101동 1호 103동 1호	2~3층	3	900,610,300	827,627,000	82,762,700	1,811,000,000	90,550,000	543,300,000	543,300,000	633,850,000
			4층	2	915,032,000	840,880,000	84,088,000	1,840,000,000	92,000,000	552,000,000	552,000,000	644,000,000
			5층	2	930,945,600	855,504,000	85,550,400	1,872,000,000	93,600,000	561,600,000	561,600,000	655,200,000
			6층	2	946,361,900	869,671,000	86,967,100	1,903,000,000	95,150,000	570,900,000	570,900,000	666,050,000
			7층	2	961,778,200	883,838,000	88,383,800	1,934,000,000	96,700,000	580,200,000	580,200,000	676,900,000
			8층	2	977,691,800	898,462,000	89,846,200	1,966,000,000	98,300,000	589,800,000	589,800,000	688,100,000
			9층	2	993,108,100	912,629,000	91,262,900	1,997,000,000	99,850,000	599,100,000	599,100,000	698,950,000
			10층	2	1,009,021,700	927,253,000	92,725,300	2,029,000,000	101,450,000	608,700,000	608,700,000	710,150,000
			11~15층	10	1,024,438,000	941,420,000	94,142,000	2,060,000,000	103,000,000	618,000,000	618,000,000	721,000,000
			16~20층	10	1,031,400,200	947,818,000	94,781,800	2,074,000,000	103,700,000	622,200,000	622,200,000	725,900,000
			21~25층	10	1,038,362,400	954,216,000	95,421,600	2,088,000,000	104,400,000	626,400,000	626,400,000	730,800,000
			26~30층	10	1,045,324,600	960,614,000	96,061,400	2,102,000,000	105,100,000	630,600,000	630,600,000	735,700,000
			31~33층	5	1,052,286,800	967,012,000	96,701,200	2,116,000,000	105,800,000	634,800,000	634,800,000	740,600,000
		102동 1호	2~3층	2	883,204,800	811,632,000	81,163,200	1,776,000,000	88,800,000	532,800,000	532,800,000	621,600,000
			4층	1	898,123,800	825,342,000	82,534,200	1,806,000,000	90,300,000	541,800,000	541,800,000	632,100,000
			5층	1	913,540,100	839,509,000	83,950,900	1,837,000,000	91,850,000	551,100,000	551,100,000	642,950,000
			6층	1	928,956,400	853,676,000	85,367,600	1,868,000,000	93,400,000	560,400,000	560,400,000	653,800,000
			7층	1	944,870,000	868,300,000	86,830,000	1,900,000,000	95,000,000	570,000,000	570,000,000	665,000,000
			8층	1	960,286,300	882,467,000	88,246,700	1,931,000,000	96,550,000	579,300,000	579,300,000	675,850,000
			9층	1	975,702,600	896,634,000	89,663,400	1,962,000,000	98,100,000	588,600,000	588,600,000	686,700,000
			10층	1	991,616,200	911,258,000	91,125,800	1,994,000,000	99,700,000	598,200,000	598,200,000	697,900,000
			11~15층	5	1,007,032,500	925,425,000	92,542,500	2,025,000,000	101,250,000	607,500,000	607,500,000	708,750,000
			16~20층	5	1,013,994,700	931,823,000	93,182,300	2,039,000,000	101,950,000	611,700,000	611,700,000	713,650,000
			21~25층	5	1,020,956,900	938,221,000	93,822,100	2,053,000,000	102,650,000	615,900,000	615,900,000	718,550,000
			26~30층	5	1,027,919,100	944,619,000	94,461,900	2,067,000,000	103,350,000	620,100,000	620,100,000	723,450,000
			31~32층	2	1,034,881,300	951,017,000	95,101,700	2,081,000,000	104,050,000	624,300,000	624,300,000	728,350,000
139.3956	139	104동 1호	2~3층	2	949,345,700	872,413,000	87,241,300	1,909,000,000	95,450,000	572,700,000	572,700,000	668,150,000
			4층	1	964,264,700	886,123,000	88,612,300	1,939,000,000	96,950,000	581,700,000	581,700,000	678,650,000
			5층	1	980,178,300	900,747,000	90,074,700	1,971,000,000	98,550,000	591,300,000	591,300,000	689,850,000
			6층	1	996,091,900	915,371,000	91,537,100	2,003,000,000	100,150,000	600,900,000	600,900,000	701,050,000
			7층	1	1,012,005,500	929,995,000	92,999,500	2,035,000,000	101,750,000	610,500,000	610,500,000	712,250,000
			8층	1	1,027,919,100	944,619,000	94,461,900	2,067,000,000	103,350,000	620,100,000	620,100,000	723,450,000
			9층	1	1,043,832,700	959,243,000	95,924,300	2,099,000,000	104,950,000	629,700,000	629,700,000	734,650,000
			10층	1	1,059,746,300	973,867,000	97,386,700	2,131,000,000	106,550,000	639,300,000	639,300,000	745,850,000
			11~15층	5	1,075,659,900	988,491,000	98,849,100	2,163,000,000	108,150,000	648,900,000	648,900,000	757,050,000
			16~19층	4	1,082,622,100	994,889,000	99,488,900	2,177,000,000	108,850,000	653,100,000	653,100,000	761,950,000
			21~25층	5	1,089,584,300	1,001,287,000	100,128,700	2,191,000,000	109,550,000	657,300,000	657,300,000	766,850,000
			26~30층	5	1,096,546,500	1,007,685,000	100,768,500	2,205,000,000	110,250,000	661,500,000	661,500,000	771,750,000
			31~32층	2	1,103,508,700	1,014,083,000	101,408,300	2,219,000,000	110,950,000	665,700,000	665,700,000	776,650,000

주택형	타입 (약식 표기)	동 (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1회(30%) 2025.09.25	2회(30%) 2025.11.25	입주지정일
153.8091A	153A	102동 5호	2층	1	975,205,300	896,177,000	89,617,700	1,961,000,000	98,050,000	588,300,000	588,300,000	686,350,000
			3층	1	996,589,200	915,828,000	91,582,800	2,004,000,000	100,200,000	601,200,000	601,200,000	701,400,000
			4층	1	1,013,000,100	930,909,000	93,090,900	2,037,000,000	101,850,000	611,100,000	611,100,000	712,950,000
			5층	1	1,030,405,600	946,904,000	94,690,400	2,072,000,000	103,600,000	621,600,000	621,600,000	725,200,000
			6층	1	1,047,811,100	962,899,000	96,289,900	2,107,000,000	105,350,000	632,100,000	632,100,000	737,450,000
			7층	1	1,065,216,600	978,894,000	97,889,400	2,142,000,000	107,100,000	642,600,000	642,600,000	749,700,000
			8층	1	1,082,622,100	994,889,000	99,488,900	2,177,000,000	108,850,000	653,100,000	653,100,000	761,950,000
			9층	1	1,100,027,600	1,010,884,000	101,088,400	2,212,000,000	110,600,000	663,600,000	663,600,000	774,200,000
			10층	1	1,117,433,100	1,026,879,000	102,687,900	2,247,000,000	112,350,000	674,100,000	674,100,000	786,450,000
			11~15층	5	1,134,838,600	1,042,874,000	104,287,400	2,282,000,000	114,100,000	684,600,000	684,600,000	798,700,000
			16~19층	4	1,142,298,100	1,049,729,000	104,972,900	2,297,000,000	114,850,000	689,100,000	689,100,000	803,950,000
			21~25층	5	1,150,254,900	1,057,041,000	105,704,100	2,313,000,000	115,650,000	693,900,000	693,900,000	809,550,000
			26~30층	5	1,157,714,400	1,063,896,000	106,389,600	2,328,000,000	116,400,000	698,400,000	698,400,000	814,800,000
			31~32층	2	1,165,671,200	1,071,208,000	107,120,800	2,344,000,000	117,200,000	703,200,000	703,200,000	820,400,000
		104동 5호	2~3층	2	977,194,500	898,005,000	89,800,500	1,965,000,000	98,250,000	589,500,000	589,500,000	687,750,000
			4층	1	993,605,400	913,086,000	91,308,600	1,998,000,000	99,900,000	599,400,000	599,400,000	699,300,000
			5층	1	1,011,010,900	929,081,000	92,908,100	2,033,000,000	101,650,000	609,900,000	609,900,000	711,550,000
			6층	1	1,028,416,400	945,076,000	94,507,600	2,068,000,000	103,400,000	620,400,000	620,400,000	723,800,000
			7층	1	1,045,821,900	961,071,000	96,107,100	2,103,000,000	105,150,000	630,900,000	630,900,000	736,050,000
			8층	1	1,063,227,400	977,066,000	97,706,600	2,138,000,000	106,900,000	641,400,000	641,400,000	748,300,000
			9층	1	1,080,632,900	993,061,000	99,306,100	2,173,000,000	108,650,000	651,900,000	651,900,000	760,550,000
			10층	1	1,098,038,400	1,009,056,000	100,905,600	2,208,000,000	110,400,000	662,400,000	662,400,000	772,800,000
			11~15층	5	1,115,443,900	1,025,051,000	102,505,100	2,243,000,000	112,150,000	672,900,000	672,900,000	785,050,000
			16~20층	5	1,122,903,400	1,031,906,000	103,190,600	2,258,000,000	112,900,000	677,400,000	677,400,000	790,300,000
			21~25층	5	1,130,860,200	1,039,218,000	103,921,800	2,274,000,000	113,700,000	682,200,000	682,200,000	795,900,000
			26~30층	5	1,138,817,000	1,046,530,000	104,653,000	2,290,000,000	114,500,000	687,000,000	687,000,000	801,500,000
			31~32층	2	1,146,276,500	1,053,385,000	105,338,500	2,305,000,000	115,250,000	691,500,000	691,500,000	806,750,000
153.9135B	153B	102동 2호	2~3층	2	977,194,500	898,005,000	89,800,500	1,965,000,000	98,250,000	589,500,000	589,500,000	687,750,000
			4층	1	993,605,400	913,086,000	91,308,600	1,998,000,000	99,900,000	599,400,000	599,400,000	699,300,000
			5층	1	1,011,010,900	929,081,000	92,908,100	2,033,000,000	101,650,000	609,900,000	609,900,000	711,550,000
			6층	1	1,028,416,400	945,076,000	94,507,600	2,068,000,000	103,400,000	620,400,000	620,400,000	723,800,000
			7층	1	1,045,821,900	961,071,000	96,107,100	2,103,000,000	105,150,000	630,900,000	630,900,000	736,050,000
			8층	1	1,063,227,400	977,066,000	97,706,600	2,138,000,000	106,900,000	641,400,000	641,400,000	748,300,000
			9층	1	1,080,632,900	993,061,000	99,306,100	2,173,000,000	108,650,000	651,900,000	651,900,000	760,550,000
			10층	1	1,098,038,400	1,009,056,000	100,905,600	2,208,000,000	110,400,000	662,400,000	662,400,000	772,800,000
			11~15층	5	1,115,443,900	1,025,051,000	102,505,100	2,243,000,000	112,150,000	672,900,000	672,900,000	785,050,000
			16~19층	4	1,123,400,700	1,032,363,000	103,236,300	2,259,000,000	112,950,000	677,700,000	677,700,000	790,650,000
			21~25층	5	1,130,860,200	1,039,218,000	103,921,800	2,274,000,000	113,700,000	682,200,000	682,200,000	795,900,000
			26~30층	5	1,138,817,000	1,046,530,000	104,653,000	2,290,000,000	114,500,000	687,000,000	687,000,000	801,500,000
			31~32층	2	1,146,276,500	1,053,385,000	105,338,500	2,305,000,000	115,250,000	691,500,000	691,500,000	806,750,000

주택형	타입 (약식 표기)	동 (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1회(30%) 2025.09.25	2회(30%) 2025.11.25	입주지정일
153.8743C	153C	101동 2호 103동 5호	2~3층	3	1,012,005,500	929,995,000	92,999,500	2,035,000,000	101,750,000	610,500,000	610,500,000	712,250,000
			4층	2	1,028,416,400	945,076,000	94,507,600	2,068,000,000	103,400,000	620,400,000	620,400,000	723,800,000
			5층	2	1,045,821,900	961,071,000	96,107,100	2,103,000,000	105,150,000	630,900,000	630,900,000	736,050,000
			6층	2	1,063,227,400	977,066,000	97,706,600	2,138,000,000	106,900,000	641,400,000	641,400,000	748,300,000
			7층	2	1,080,632,900	993,061,000	99,306,100	2,173,000,000	108,650,000	651,900,000	651,900,000	760,550,000
			8층	2	1,098,038,400	1,009,056,000	100,905,600	2,208,000,000	110,400,000	662,400,000	662,400,000	772,800,000
			9층	2	1,115,443,900	1,025,051,000	102,505,100	2,243,000,000	112,150,000	672,900,000	672,900,000	785,050,000
			10층	2	1,132,849,400	1,041,046,000	104,104,600	2,278,000,000	113,900,000	683,400,000	683,400,000	797,300,000
			11~15층	10	1,150,254,900	1,057,041,000	105,704,100	2,313,000,000	115,650,000	693,900,000	693,900,000	809,550,000
			16~19층	8	1,157,714,400	1,063,896,000	106,389,600	2,328,000,000	116,400,000	698,400,000	698,400,000	814,800,000
			21~25층	10	1,165,671,200	1,071,208,000	107,120,800	2,344,000,000	117,200,000	703,200,000	703,200,000	820,400,000
			26~30층	10	1,173,130,700	1,078,063,000	107,806,300	2,359,000,000	117,950,000	707,700,000	707,700,000	825,650,000
			31~33층	5	1,181,087,500	1,085,375,000	108,537,500	2,375,000,000	118,750,000	712,500,000	712,500,000	831,250,000
		101동 5호 103동 2호	2~3층	3	1,031,400,200	947,818,000	94,781,800	2,074,000,000	103,700,000	622,200,000	622,200,000	725,900,000
			4층	2	1,047,811,100	962,899,000	96,289,900	2,107,000,000	105,350,000	632,100,000	632,100,000	737,450,000
			5층	2	1,065,216,600	978,894,000	97,889,400	2,142,000,000	107,100,000	642,600,000	642,600,000	749,700,000
			6층	2	1,082,622,100	994,889,000	99,488,900	2,177,000,000	108,850,000	653,100,000	653,100,000	761,950,000
			7층	2	1,100,027,600	1,010,884,000	101,088,400	2,212,000,000	110,600,000	663,600,000	663,600,000	774,200,000
			8층	2	1,117,433,100	1,026,879,000	102,687,900	2,247,000,000	112,350,000	674,100,000	674,100,000	786,450,000
			9층	2	1,134,838,600	1,042,874,000	104,287,400	2,282,000,000	114,100,000	684,600,000	684,600,000	798,700,000
			10층	2	1,152,244,100	1,058,869,000	105,886,900	2,317,000,000	115,850,000	695,100,000	695,100,000	810,950,000
			11~15층	10	1,169,152,300	1,074,407,000	107,440,700	2,351,000,000	117,550,000	705,300,000	705,300,000	822,850,000
			16~19층	8	1,177,109,100	1,081,719,000	108,171,900	2,367,000,000	118,350,000	710,100,000	710,100,000	828,450,000
			21~25층	10	1,184,568,600	1,088,574,000	108,857,400	2,382,000,000	119,100,000	714,600,000	714,600,000	833,700,000
			26~30층	10	1,192,525,400	1,095,886,000	109,588,600	2,398,000,000	119,900,000	719,400,000	719,400,000	839,300,000
			31~33층	5	1,200,482,200	1,103,198,000	110,319,800	2,414,000,000	120,700,000	724,200,000	724,200,000	844,900,000
156.0000A	156A1	102동 3, 4호	2~3층	4	1,048,308,400	963,356,000	96,335,600	2,108,000,000	105,400,000	632,400,000	632,400,000	737,800,000
			4층	2	1,065,216,600	978,894,000	97,889,400	2,142,000,000	107,100,000	642,600,000	642,600,000	749,700,000
			5층	2	1,082,622,100	994,889,000	99,488,900	2,177,000,000	108,850,000	653,100,000	653,100,000	761,950,000
			6층	2	1,100,524,900	1,011,341,000	101,134,100	2,213,000,000	110,650,000	663,900,000	663,900,000	774,550,000
			7층	2	1,137,822,400	1,045,616,000	104,561,600	2,288,000,000	114,400,000	686,400,000	686,400,000	800,800,000
			8층	2	1,155,725,200	1,062,068,000	106,206,800	2,324,000,000	116,200,000	697,200,000	697,200,000	813,400,000
			9층	2	1,173,130,700	1,078,063,000	107,806,300	2,359,000,000	117,950,000	707,700,000	707,700,000	825,650,000
			10층	2	1,191,033,500	1,094,515,000	109,451,500	2,395,000,000	119,750,000	718,500,000	718,500,000	838,250,000
			11~15층	10	1,208,936,300	1,110,967,000	111,096,700	2,431,000,000	121,550,000	729,300,000	729,300,000	850,850,000
			16~20층	10	1,216,395,800	1,117,822,000	111,782,200	2,446,000,000	122,300,000	733,800,000	733,800,000	856,100,000
			21~25층	10	1,224,352,600	1,125,134,000	112,513,400	2,462,000,000	123,100,000	738,600,000	738,600,000	861,700,000
			26~30층	10	1,232,309,400	1,132,446,000	113,244,600	2,478,000,000	123,900,000	743,400,000	743,400,000	867,300,000
			31층	2	1,240,266,200	1,139,758,000	113,975,800	2,494,000,000	124,700,000	748,200,000	748,200,000	872,900,000
	156A2	104동 3, 4호	6층	1	1,085,605,900	997,631,000	99,763,100	2,183,000,000	109,150,000	654,900,000	654,900,000	764,050,000
			7층	1	1,103,508,700	1,014,083,000	101,408,300	2,219,000,000	110,950,000	665,700,000	665,700,000	776,650,000
			8층	2	1,121,411,500	1,030,535,000	103,053,500	2,255,000,000	112,750,000	676,500,000	676,500,000	789,250,000
			9층	1	1,139,314,300	1,046,987,000	104,698,700	2,291,000,000	114,550,000	687,300,000	687,300,000	801,850,000
			10층	2	1,156,719,800	1,062,982,000	106,298,200	2,326,000,000	116,300,000	697,800,000	697,800,000	814,100,000
			11~15층	9	1,174,622,600	1,079,434,000	107,943,400	2,362,000,000	118,100,000	708,600,000	708,600,000	826,700,000
			16~20층	10	1,182,579,400	1,086,746,000	108,674,600	2,378,000,000	118,900,000	713,400,000	713,400,000	832,300,000
			21~25층	10	1,190,536,200	1,094,058,000	109,405,800	2,394,000,000	119,700,000	718,200,000	718,200,000	837,900,000
			26~30층	9	1,198,493,000	1,101,370,000	110,137,000	2,410,000,000	120,500,000	723,000,000	723,000,000	843,500,000
			31층	1	1,206,449,800	1,108,682,000	110,868,200	2,426,000,000	121,300,000	727,800,000	727,800,000	849,100,000

주택형	타입 (약식 표기)	동 (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1회(30%) 2025.09.25	2회(30%) 2025.11.25	입주지정일
156.5750B	156B	101동 3, 4호 103동 3, 4호	2~3층	5	1,042,340,800	957,872,000	95,787,200	2,096,000,000	104,800,000	628,800,000	628,800,000	733,600,000
			4층	4	1,059,249,000	973,410,000	97,341,000	2,130,000,000	106,500,000	639,000,000	639,000,000	745,500,000
			5층	4	1,077,151,800	989,862,000	98,986,200	2,166,000,000	108,300,000	649,800,000	649,800,000	758,100,000
			6층	4	1,094,557,300	1,005,857,000	100,585,700	2,201,000,000	110,050,000	660,300,000	660,300,000	770,350,000
			7층	4	1,112,460,100	1,022,309,000	102,230,900	2,237,000,000	111,850,000	671,100,000	671,100,000	782,950,000
			8층	4	1,129,865,600	1,038,304,000	103,830,400	2,272,000,000	113,600,000	681,600,000	681,600,000	795,200,000
			9층	4	1,147,768,400	1,054,756,000	105,475,600	2,308,000,000	115,400,000	692,400,000	692,400,000	807,800,000
			10층	4	1,165,671,200	1,071,208,000	107,120,800	2,344,000,000	117,200,000	703,200,000	703,200,000	820,400,000
			11~15층	20	1,183,076,700	1,087,203,000	108,720,300	2,379,000,000	118,950,000	713,700,000	713,700,000	832,650,000
			16~20층	20	1,191,033,500	1,094,515,000	109,451,500	2,395,000,000	119,750,000	718,500,000	718,500,000	838,250,000
			21~25층	20	1,198,990,300	1,101,827,000	110,182,700	2,411,000,000	120,550,000	723,300,000	723,300,000	843,850,000
			26~30층	20	1,206,947,100	1,109,139,000	110,913,900	2,427,000,000	121,350,000	728,100,000	728,100,000	849,450,000
			31~32층	6	1,214,903,900	1,116,451,000	111,645,100	2,443,000,000	122,150,000	732,900,000	732,900,000	855,050,000
156.8419C	156C	104동 2호	2~3층	2	1,077,649,100	990,319,000	99,031,900	2,167,000,000	108,350,000	650,100,000	650,100,000	758,450,000
			4층	1	1,094,557,300	1,005,857,000	100,585,700	2,201,000,000	110,050,000	660,300,000	660,300,000	770,350,000
			5층	1	1,112,460,100	1,022,309,000	102,230,900	2,237,000,000	111,850,000	671,100,000	671,100,000	782,950,000
			6층	1	1,129,865,600	1,038,304,000	103,830,400	2,272,000,000	113,600,000	681,600,000	681,600,000	795,200,000
			7층	1	1,147,768,400	1,054,756,000	105,475,600	2,308,000,000	115,400,000	692,400,000	692,400,000	807,800,000
			8층	1	1,165,671,200	1,071,208,000	107,120,800	2,344,000,000	117,200,000	703,200,000	703,200,000	820,400,000
			9층	1	1,183,574,000	1,087,660,000	108,766,000	2,380,000,000	119,000,000	714,000,000	714,000,000	833,000,000
			10층	1	1,201,476,800	1,104,112,000	110,411,200	2,416,000,000	120,800,000	724,800,000	724,800,000	845,600,000
			11~15층	5	1,218,882,300	1,120,107,000	112,010,700	2,451,000,000	122,550,000	735,300,000	735,300,000	857,850,000
			16~19층	4	1,226,839,100	1,127,419,000	112,741,900	2,467,000,000	123,350,000	740,100,000	740,100,000	863,450,000
			21~25층	5	1,234,795,900	1,134,731,000	113,473,100	2,483,000,000	124,150,000	744,900,000	744,900,000	869,050,000
			26~30층	5	1,242,752,700	1,142,043,000	114,204,300	2,499,000,000	124,950,000	749,700,000	749,700,000	874,650,000
			31~32층	2	1,250,709,500	1,149,355,000	114,935,500	2,515,000,000	125,750,000	754,500,000	754,500,000	880,250,000
160.0050	160	104동 3호	2층	1	1,054,773,300	969,297,000	96,929,700	2,121,000,000	106,050,000	636,300,000	636,300,000	742,350,000
			4층	1	1,072,178,800	985,292,000	98,529,200	2,156,000,000	107,800,000	646,800,000	646,800,000	754,600,000
168.1895	168	104동 3, 4호	3층	1	1,108,979,000	1,019,110,000	101,911,000	2,230,000,000	111,500,000	669,000,000	669,000,000	780,500,000
			5층	1	1,146,276,500	1,053,385,000	105,338,500	2,305,000,000	115,250,000	691,500,000	691,500,000	806,750,000
			7층	1	1,184,071,300	1,088,117,000	108,811,700	2,381,000,000	119,050,000	714,300,000	714,300,000	833,350,000
			9층	1	1,222,363,400	1,123,306,000	112,330,600	2,458,000,000	122,900,000	737,400,000	737,400,000	860,300,000
			11층	1	1,260,158,200	1,158,038,000	115,803,800	2,534,000,000	126,700,000	760,200,000	760,200,000	886,900,000
170.2682	170	104동 3, 4호	2~3층	2	1,123,898,000	1,032,820,000	103,282,000	2,260,000,000	113,000,000	678,000,000	678,000,000	791,000,000
			4층	1	1,141,800,800	1,049,272,000	104,927,200	2,296,000,000	114,800,000	688,800,000	688,800,000	803,600,000
			5층	1	1,161,195,500	1,067,095,000	106,709,500	2,335,000,000	116,750,000	700,500,000	700,500,000	817,250,000
			6층	1	1,180,590,200	1,084,918,000	108,491,800	2,374,000,000	118,700,000	712,200,000	712,200,000	830,900,000
226.6464P	226P	102동 3호	32층	1	2,834,610,000	2,604,900,000	260,490,000	5,700,000,000	285,000,000	1,710,000,000	1,710,000,000	1,995,000,000
244.7709P	244P	101동 3호 103동 3호	32~33층	2	2,983,800,000	2,742,000,000	274,200,000	6,000,000,000	300,000,000	1,800,000,000	1,800,000,000	2,100,000,000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필로티 등으로 인해 2~4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anadd.co.kr)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 합산 시 단수 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 조정에 따른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 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수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일부 제공되는 가전・가구 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전산검색 결과 당첨 사실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니 청약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대상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사업주체(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어나드 범어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주택법」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일정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5%), 중도금(1~2회차 60%), 잔금(35%)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북도)</th></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able>

4-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9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tr><th>배점항목</th><th>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비고</th></tr>
<tr><th></th><th></th><th>기준</th><th>점수</th><th></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able>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td></tr>
</table>

4-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table>
<tr><td rowspan="5">당첨자
선정방법</td><td>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td><td>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td></tr>
<tr><td>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td><td>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td></tr>
<tr><td>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td><td>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td></tr>
<tr><td colspan="2">■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비고</td><td colspan="2">■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북도)</th></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거주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
</table>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tr><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able></td></tr>
</table>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08.(화) ~ 2025.07.17(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7.0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자격확인서류(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제출기간

구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	2025.07.10.(목) ~ 2025.07.14.(월) (10:00~16:30)	어나드 범어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0-1)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O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O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다자녀가구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노부모 부양자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O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O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O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O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서류 제출 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체결	2025.07.21.(월) ~ 2025.07.23.(수) (10:00~16:30)	어나드 범어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0-1)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공고 후 경쟁이 미발생할 경우 자격제한 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기간은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하나은행	103-910064-621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자금관리사인 (주)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금관리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은 시행사 겸 매도인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 ㈜모아종합건설을 대리하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납하며, 수납 분양대금으로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업무만을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담당할 뿐 자금집행의 타당성, 시행사 겸 매도인의 임을 포함하여 기타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계약자일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금 납부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 가능합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 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으로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상기 모계좌 [하나은행 103-910064-62104, 예금주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청약자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청약자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 (홈페이지 서식 게시)
	O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인지세)	청약자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계약서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사업주체, 계약자 17만 5천원씩 균등 부담)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분양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제 운영예정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정담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2)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최초 분양계약자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약식)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총분양 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공급금액의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 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개시월 이자 정산일까지(단, 이자 정산일 이전에 입주 개시가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 이자 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 정산일"이라 함)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입주개시월 이자 정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적격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대출금융 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 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기존에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 및 무상제공 품목

1.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구분	136	139	153A	153B	153C	156A1	156A2	156B	156C	160	168	170	226P	244P
금액	전 타입 무상													

-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무상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계약체결은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형태, 위치, 규격, 사양, 색상, 열림(개폐)방향 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층세대 바닥 배관으로 인하여 천장 일부 구간에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침실 포함)은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입문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무상제공 품목

■ 시스템 에어컨

구분	실내기 설치위치	실내기 수량	제조사
136/139/153A/153B/153C/156C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삼성전자
156B	거실(2개)/주방/침실1/침실2/침실3	6	
156A1/156A2/160/17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	
168	거실(2개)/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7	
226P	거실/주방(2개)/침실1/침실2/침실3/침실4/서재	8	
244P	거실(2개)/주방/보조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가족실/알파룸	1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각 실내기 소요 용량 합산하여 제조사가 보증한 범위 내에 적합한 사양으로 설치됩니다.
※ 에어컨 실내기 선정시 각 실별로 적절한 단위부하에 따라 에어컨 장비가 선정되며 부득이할 경우 장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실내기 사이즈는 장비사양, 제조사에 따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실내기 1대당 1개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하며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선정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공으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또는 일부세대 주방/식당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알파룸에는 시스템에어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전

구분	청정환기시스템	에어드레서	드레스룸제습기	욕실복합환풍기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인덕션(주방)	인덕션(보조주방)
제조사	경동나비엔	삼성전자	삼성전자	힘펠	귀뚜라미환경테크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 가전제품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해당 제품사에서 개인정보 요구로 계약자가 직접 의뢰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의 설치 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의 소모성 필터는 사용시점 기준으로 최소 연 1회이상 교체를 권장해드리며 각 필터(프리필터, 집진필터 등)는 사용 환경에 따라 교체 및 세척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모성 필터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교체하여야 합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은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통합 컨트롤러는 주방에 노출시공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실내공기질측정(AIG) 장치로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당 1개가 제공되며, 주방에 환기장치용 4.3인치 Color LCD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 빌트인가전(식기세척기 등)의 비노출면(측면, 후면, 하부 등)에는 가구, 마루,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공급으로 별도의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의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전기차단 전용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추후 가스사용이 필요할 경우 입주 이후 개별 입주자 비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136, 139, 153A, 153B, 153C 타입의 보조주방에는 인덕션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드레스룸제습기는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제조사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가 욕실 별로 기본 제공되어 욕실 내 별도 환풍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일부 욕실은 건식 세면 공간에 복합환풍기 설치 시 욕실 환기를 위한 별도의 배기구가 설치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각 1대당 1개의 리모컨이 지급되며 추가 리모컨은 제조사를 통해 개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드레스룸제습기는 벽면에 고정형 컨트롤러가 설치되며 무선 리모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구

구분	특화형드레스룸	고급형 프레임 샤워부스	조명형 욕실장	외산주방가구 (Nolte)	외산주방가구 (Molteni&C Dada Engineered)	주방상판벽체	중문	원목마루
비고	벽판넬형, 장식장	오토클로징 댐핑 기능	수건 살균기 포함	136~153C	156A1~244P	세라믹 타일	현관	거실 및 각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됩니다. 또한 본공사 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 붙박이가구 내부 및 오픈장 부위에 전열기기 설치 및 사용 시 가구에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외산주방가구 중 Nolte는 136, 139, 153A, 153B, 153C 타입, Molteni&C Dada Engineered는 156A1, 156A2, 156B, 156C, 160, 168, 170, 226P, 244P 타입에 설치 됩니다.
※ 특화형 드레스룸 아일랜드 가구는 153C, 156B, 156C, 226P, 244P 타입에만 설치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가전 및 가구제품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반공통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이 필요한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정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공급금액이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완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등기 해제 및 보존등기가 될 경우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 61조에 따른 '부기등기'가 될 예정이며, 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담보신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예정기간이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에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개정, 노사분규(연관업체 포함), 주요 질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중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에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개정, 노사분규(연관업체 포함) 주요 질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컨시어지 서비스는 전용 앱을 통한 바우처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며, 조식 및 반찬 딜리버리,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하우스키핑 및 홈케어, 정리수납, 세차, 세탁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통	• 입주민에게 영화관(비상설 상영장)은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간 120일 동안은 개봉 영화를 상영하며, 상영일은 대형 영화 개봉일, 방학, 각종 행사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람료는 별도 책정되어 관리비에 청구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5년간 운영이 되고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컨시어지 서비스 전용 앱은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홈 앱과 분리되어 별도 운영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서 서비스는 전용어플 또는 전용번호를 통하여 2년간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상기 모든 서비스는 향후 입주자 대표협의회 구성 후 협의에 의해 운영방법 및 운영여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	• 학생배치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요인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 대구시 동천초등학교는 현재 학교시설 부족으로 유입학생의 배치가 불가합니다. 단, 구.대구MBC 일대에서 야시골공원 북동쪽 순환로를 따라 범어초로 가는 보차도 구분된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되고, 공동주택 입주 초등학생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통학지원이 있을 경우, 범어초로 배치 예정입니다. • 사업시행자의 통학차량 및 차량 탑승 안전요원은 7년간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 종료후에는 별도 통학지원이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학차량 운영시점 시 관련 법령 및 관할 교육청, 범어초등학교,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에 따라 운영방법(생활편의, 통학 등)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입주민 초등학생은 범어초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나 추후 배치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 중학생은 2학교군,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 배치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와 초등학교 사이의 통학로 정보(거리, 시간, 지도 등)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 현장여건, 시공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정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은 2020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8. 09. 01. 시행)'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반층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표현된 색상, 패턴, 마감재, 옥상구조물, BI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견본주택	•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아파트 136, 153C, 156A1 타입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 136, 153C, 156A1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 139, 153A, 153B, 156A2, 156B, 156C, 160, 168, 170, 226P, 244P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 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조명,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안방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된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공되지 않으며 안방 발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됩니다. 또한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 시 분합문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포장(자재 및 문양),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현관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스식 설치 불가) ※ 세탁기, 건조기는 전시를 위한 것으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지환경	•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 (도장, PET, LPM, 유리 등)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 여건 시설 미비,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복합개발사업(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의 단지로 각 시설로 인한 소음, 시선간섭, 교통 혼잡 등으로 생활의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 경관조명, 광고전광판 등에 의해 일부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3동, 104동 야간 광고전광판 눈부심 발생) • 단지 외부 기반시설(가로수, 도로, 공원, 녹지 등)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및 이와 연계된 단지 내 동선(산책로 등)은 추후 기반시설 계획변경이나 인허가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위치 및 폭, 선형 등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도로 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사면경사/단차구조물(옹벽 등)이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곽 동측 및 남측 보도는 공공보행통로 지정(지구단위계획 반영)되었으며, 단지내도로(토지 소유권은 입주민 공동 소유)에 포함되어 향후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유지관리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여 항공기 소음 노출 지역인 사실과 그에 따른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단지 내에 지역정압기 및 사업자정압기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주상복합 건축물로 공동주택 이외에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공동주택 이외의 용도에 입점 업종 및 도입 시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및 주동계획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단위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및 주동계획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 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여 법적인 인동거리가 없어, 세대 위치에 따라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인접한 주변건물 등으로 인해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등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오피스텔 분리수거장은 지하3층에 위치하며, 청소차량 진출입시 공동주택차량 출입구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출입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4동 저층세대는 단지 출입구 문주계획 및 차량출입구 계획으로 차량소음과 조망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104동 하부에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 부대시설 위치하여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2동 저층세대는 판매시설과의 높이(레벨) 차이로 인해 벽면이 노출되며, 이로 인해 시선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동측, 104동 서측 저층(3층 이하) 세대는 전면 구조물(계단, 엘리베이터 등)로 인한 시선간섭과 부대시설 실외기 설치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도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 30~32층에 릴렉스존, 피트니스센터가 위치하여 하부세대(29층~31층)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관련도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놀이터, 휴게공간, 옥상정원 등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탑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는 동 당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101~102동은 102동 1층, 103~104동은 104동 1층에 배치되어 있고 지하3층 램프#3 인근에 재활용 창고 및 예비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은 입체적 단지 조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및 주동계획	• 단지 내부와 외부는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조경석, 석축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및 석축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해 변경하지 않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조경 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보행 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의 책임입니다. • 단지 내 조경 공간 및 조경 시설물 내 취사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옥외공간(수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수경시설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설치예정 위치를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등의 조경 시설물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 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상 조경공간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창호형태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사하셔야 합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 시 및 소방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 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진능력은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에 해당하고 최대지반가속도는 0.24g입니다. • 아파트를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출입구 및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뿜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각 동 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별 입면 도출 세대 상부의 우수는 자연구배로 계획되어, 이로인해 저층 및 하부세대는 우수 낙하에 따른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주상복합의 동 표기는 설계도서를 준용하여 아파트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오피스텔은 201동으로 표기됩니다

단지 및 주동계획	• 101~104동 옥상층에는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201동) 및 101~102동 옥상 일부구간에 옥상조경이 계획되며,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인원의 접근으로 인근 세대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 내(서측)에는 입주자 및 외부 지역주민이 사용 가능한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통제 또는 통제를 위한 휀스 등의 차단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201동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옥상은 101동에서만 진입이 가능하며, 판매 및 근린상가에서 사용되는 공용동선은 없습니다. • 단지내 보도(동측, 남측)는 공공보행통로 지정 및 설치됩니다.
주차장	• 주차장은 공동주택 1,314대, 오피스텔 184대,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170대 등 총 1,668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1,314대 중 일반형 672대, 확장형 451대, 경형 115대, 장애인 40대, 전기차 전용 36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주차 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5층으로 구성되며,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2층~지하3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복합건물의 특성상 용도별 동일층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보행자의 이동은 제한이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동측(1개소), 남측(1개소)에 위치하며, 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남측(1개소)에 위치하여,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지하 3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택배차량은 동측도로에서 지하3층으로 진입 가능하며,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이 각 동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1, 2, 4, 5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 여건에 따라 일부 경우 주차 후 해당 동의 승강기 홀 접근의 이동거리가 멀거나 증가, 해당 동의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전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합시설 특성에 따라 101동은 지하1층과 지하2층에서는 주동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102동은 지하1층에 주동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과 아파트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출입구 편의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바닥마감은 방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강우, 강설 시 차량 등을 통해 유입되어 바닥에 떨어진 물기로 인한 낙수피해는 하자보증 및 피해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설치되는 배관, 펌프류 외 기계설비 등에 의한 기준값 이내의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대 복리시설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주택법상 법적 요구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북카페),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이며,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부대시설(경비실, 조경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정화조, 소방시설 등)은 아파트, 오피스텔이 공유하며,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기준층은 바닥_타일, 벽_타일 마감기준이며 방화문, 점검구 등의 설치부위는 도장으로 시공되며(오피스텔 기준층은 바닥_타일, 벽_도장 마감기준), 마감재의 품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각 실의 천장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대구광역시 수성구(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에 인건비, 승강기 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의거 돌봄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시공사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동안의 관리비(전기세)는 시공사에서 납부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된 후 단지에서 A/S센터 사용공간을 해당시설로 이용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타공간으로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타공간이 없거나 A/S센터 사무실로 운영이 불가한 공간일 경우 단지에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에 설치된 전기/설비기기관련 각종 계량장치(전력량계, 급탕/급수계량기, 공조설비의 유량계, 열량계 등)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추후 시설운영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각 실별 또는 각 구간별 각종 계량장치는 운영주체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옥상에 옥상조경이 계획되며,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인원의 접근으로 인근 세대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컨시어지 서비스를 위하여 지하1층 커뮤니티 시설 중 컨시어지 서비스 및 사무실을 무상제공 기간인 2년간 무상으로 이용하며 무상이용기간 이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각각 구분되어 구성되며, 입주자의 결정에 따라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139, 153A, 153B, 156A2, 156B, 156C, 160, 168, 170, 226P, 244P 타입은 건립세대인 136, 153C, 156A1 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45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04동 스카이라운지(30~32층) 하부세대는 커뮤니티 시설의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세대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표준실험동 등에서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사후확인제도, `22.8.4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건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준용)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피난구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로 동선에 방해가 되는 다른 물품을 적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 시 물걸레 등으로 건식청소를 해야하며 물을 뿌려서 하는 습식청소 등으로 하부층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차수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이 있어 개폐 시 해당세대와 하부세대에 경보 및 월패드에 연동되며 하부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하향식 피난구의 최하층 세대는 피난동선 확보를 위해 대피실창이 외부개폐창으로 설치되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구간에 보일러가 설치됨에 따라, 미관 개선을 위해 철재마감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지 관리 시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내 세탁기/건조기 설치공간은 가로 160cm, 세로 90cm 규격(최소크기임)으로 확보하여 해당 규격 내에서 가전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타입의 경우 가전 용량이나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다용도실 도어를 탈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 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 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과 세라믹타일 등은 자재특성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나누기 위치는 본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 세라믹, 거실 아트월 타일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합니다. • 세대 내 바닥재 마루 자재의 구성 부재 중 심재(코어)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됩니다. • 원목마루의 패턴 및 컬러는 생산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천연자재 특성상 옹이 등이 포함되어 있고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목마루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는 K.S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특성상 표면 강도가 약하여 사용자의 관리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중 하자(찍힘, 긁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 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 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설치공간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각 단위실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대피창의 락장치를 해제하여 전면개방 하는 경우 등 관리미흡의 경우 강풍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창호탈락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보일러는 침실1 발코니에 철재 칸막이 내부에 설치되며 보일러 작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는 AL창호 TURN&TILT 창호가 설치되며 열림방향은 실내이며 안전을 고려하여 열림각도는 30도로 고정됩니다. • 주방가구는 136/139/153A/153B/153C 타입은 독일주방가구 Nolte, 156A1/156A2/156B/156C/160/168/170/226P/244P 타입은 이탈리아 가구 Dada가 시공되며 보조주방은 국산가구가 설치됩니다. • 보조주방, 세탁실은 비난방 구간입니다. • 대피공간 중 각 동 2층 판매시설 및 2층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외창이 설치됩니다. • 20층 이하 세대 소방관 진입을 위한 창호와 난간이 설치됩니다. • 각 동 외부장식물 설치에 있어 일부세대에 외부창호 주변 외부장식물이 설치됩니다.
창호	•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방충망은 개폐창에만 설치되며, 방충망으로 인해 창호개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침실창 중 일부는 관계 법령 및 심의 조치에 따라 비상시 소방관 진입창으로 이용되고, 소방관 진입창 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 소방관 진입창은 법적 기준에 따라 52mm 삼중유리로 설치되며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난간대가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세대 내 단열 및 결로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에 관계법령에 따른 진입창 표시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내에서 시선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최하층(2층)세대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 외부 탈출을 위해 발코니 창호가 외부로 개방되는 타입으로 설치되며(외부 고정사다리 포함), 이로 인해 방범, 보안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견본주택에 비치된 관련도서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 각 세대 거실 및 안방 발코니 외부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가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리난간대는 소방관 진입창에만 설치됩니다. • 226P 타입, 244P 타입의 테라스 창호는 PL(LX하우시스)창호가 설치됩니다.
공용 기계전기 설비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부지 내, 외부 유출 입구 등)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 시스템, 우수처리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지상 구조물(환기/제연용 DA, 탑라이트, 발전기 연도, 천창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인근 호실에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기,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효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로만 사용가능하며, 이삿짐 사다리차를 통한 운반은 불가능합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 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인수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옥상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격뢰, 중계기, 무선통신 보조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는 이동통신 기간사업자의 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되며, 지하3층 오피스텔동 공조실, 지하3층 101동 창고 및 103동 창고에 중계장치가 설치됩니다. • TV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103동, 201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공용 기계전기 설비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하부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 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내진 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D, AD 등 샤프트 벽 내부에는 미장/도장 등의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 남동측 판매시설 부근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101동, 102동, 201동 옥상에는 소화용 수조가 설치되어 인접 호실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대 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전 시 운전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201동 지하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201동 옥상에는 정화조, 음식물이송설비 배기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 102, 103, 104동에는 각 동으로부터 기계실까지 음식물쓰레기 이송을 위한 배관과 중간기계실이 지하3, 4층에 계획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및 정화조 지상 배출장치는 103동 및 어린이놀이터 사이 또는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배출 시, 배출 차량이 인근 동에서 보일 수 있으며,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기계전기 설비	• 환기장치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일부 타입은 실외기가 2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는 노출 시공(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여건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드레인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의 손잡이의 방향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실외기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내에는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도 없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 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환기장치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주방 스위치 옆면에 설치예정이며,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장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장치의 설치위치 및 환기디퓨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치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튼박스 길이 및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음식 탈수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내부에 상부세대용(위층세대)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단위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및 냉장고장 하부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소방법규에 따라 쿡탑용 자동식소화기 및 관련 기기류가 렌지후드 덕트 내부에 설치되며 소화기 유지관리를 위해 덕트의 탈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주변 천장에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작동 시 모터의 성능관련 흡입력과 모터 소음은 비례하므로 다소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세대 기계전기 설비	• 배수 드레인, 선홈통, 각종 배관 등은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를 위해 점검구 수량이 추가되거나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천장,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환기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을 위해 장비와 덕트가 노출되거나 확장형 다용도실인 경우는 천장마감 및 점검구가 설치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체 감지기는 1, 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며, 배터리 교환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 요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거실에는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시공됩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인입을 위한 날개벽이 계획되어 견본주택과 다르게 창호 위치가 날개벽만큼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에 따라 대피실 최하층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규격 및 재질 등은 법적 기준에 따릅니다. • 타일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 스톤 포함)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오배수관, 급수급탕분배기는 아래층 세대의 해당 위치 천장내에 설치되며 상층 세대 사용 시 생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하층 세대의 경우 동파방지를 위해 급수급탕 분배기는 당해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에 2개의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난방온수 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난방 및 온수공급을 위한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사용 시 보일러 가동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일러 가동 특성상 수전에서 온수가 나오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하며 호스 내 고인 물은 퇴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및 단자함의 위치는 현관이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기계전기 설비	• 안방 발코니에는 전동형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팬트리에는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인근 침실 혹은 거실과 연동되어 난방이 공급됩니다. •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지 않는 세대의 경우에는, 주방 무선충전 멀티콘센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환풍기는 일괄소등 기능에서 제외되고, 주방 및 일반 가구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조명은 타입별 전원회로의 차이로 일괄소등 기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후면으로 가스배관이 관통할 경우 주방 상부장 내부 폭이 줄어듭니다. • 전동커튼은 거실에만 설치되며, 커튼구동기, 커튼레일, 리모컨이 제공되며, 커튼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0kg 미만의 커튼지 하중을 허용) • 일부 옵션에 따라, 세대에 적용되는 전원 구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건식 세면 공간에 세면기가 설치되어 배수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욕실 천장 또는 욕실 주변 천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식 세면 공간, 양변기만 단독으로 설치된 공간 바닥에는 냄새 역류 방지를 위해 별도의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덕션 공급으로 별도의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의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전기차단 전용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추후 가스사용이 필요할 경우 입주 이후 개별 입주자 비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기본 제공되는 설비 제품(환기장치, 욕실휀, 렌지후드, 보일러 등)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가 시공될 예정이며,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홈 전용 앱 및 세대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동현관 자동 문열림 서비스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앱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시스템에서 백그라운드 동작중인 앱을 임의로 중지시킬 경우 사용자가 앱을 다시 시작하여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함)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여부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더샵 스마트폰 앱 실행을 통한 세대 디지털 도어락의 문열림 기능은 불가합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 제품은 제조사 운영정책에 따라 외관 디자인 및 규격, 사양, 재료, 구성품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의 구성 및 기능, 연결, 문제 해결방법, 설치장소,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안전 주의사항, 제품 사양 등은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참조바라며 음성인식 스피커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입주민이 직접 해당 업체 고객센터로 접수하여 해당 업체의 A/S 정책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의 A/S 정책은 제품 보증서에 기재된 A/S 정책에 준하며, 기상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키 불출일로부터 품질보증 기간을 기산합니다. • 외부 플랫폼 연동 - 카카오, 삼성전자, LG전자, KT, 구글, 현기차 플랫폼과의 연동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연동 시 제공되는 기능은 각 플랫폼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플랫폼 운영업체에 따라 제공 기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연동을 위한 환경 및 기능의 종류는 각 플랫폼 운영업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각 플랫폼과의 연동은 입주일로부터 3년(현기차의 경우 1년)간 무상이나 각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무상기간 이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금 주체는 각 플랫폼 운영사임) - 각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플랫폼 운영업체 정책에 따릅니다. - 각 플랫폼 연동 서비스는 플랫폼 운영업체의 사정에 의해 사전 예고 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건설 더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LG전자의 가전제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단지 홈페이지 서비스, 커뮤니티 예약 시스템은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무상기간 이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플랫폼 운영업체 정책에 따릅니다. 또한 운영업체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에서의 CCTV영상 확인 기능은 관리사무소에서 외부인터넷 설치 후 CCTV 관리업체로 연결 요청하여 설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CCTV 연결 주소가 플랫폼 운영업체로 전달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 장애인용 월패드 점자 커버 및 점자 스마트 스위치는 입주 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지참 필요) - 장애인용 스마트홈 상품의 디자인, GUI 등은 개발 및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쉼표(국민DR) 서비스 - 단지 입주민이 참여 가능한 에너지쉼표(국민DR) 서비스는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 제도로, 전력거래소/수요관리사업자/정보제공사업자의 시스템 연계로 제공 및 운영되며, 각 운영사의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주요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월

- 입주예정일 : 2026년 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및 납부한 후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전염병 발생, 행정처분, 기부채납 미완료,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북카페),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설치 품목 및 설치 대수 등은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후 결정 및 설치될 예정입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 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 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고효율기자재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대구 MBC부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건축주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준공일	2026.01.07. (예정)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
층수	지하6층, 지상 33층
연면적(㎡)	220,549.04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설계자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5-0467-6
인증기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유효기간	2025-05-23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량(그린3등급)
인증용도	신축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일반건축물)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량, 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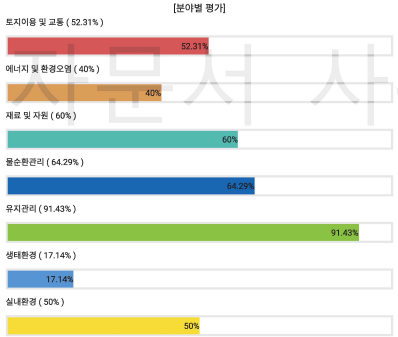

종합등급 ★★

2025년 05월 23일

(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대구 MBC부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신 청 자: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3. 대 지 위 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 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토 · 성토량(땅깎기 · 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 ·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사)한 국 그 린 빌 딩 협 의 회 장

210mm×297mm[백상지 120g/㎡]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대구MBC부지주상복합 (주거)
준공연도	:	20251230
주 소	:	대구 수성구 범어동 1
층 수	:	지하6층 / 지상33층
연면적	:	220549.0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개요		
인증번호	:	24-주-예-1+-0073
평가자	:	조영욱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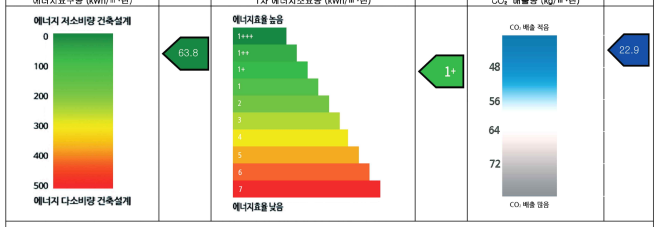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18.4	36.9	28.4	7.7
급탕	30.7	35.4	26.2	7.2
조명	14.7	14.0	38.5	6.6
환기		3.1	8.4	1.4
합계	63.8	89.4	101.5	22.9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 년 05 월 08 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등급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1등급	0.24g	Ⅶ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폭 6.0m 이상	지하1층~지하3층 2.7m / 지하4층~지하5층 2.3m	2.7m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3412025-101-0000200 호	898,066,65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미드엔지니어링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서한컨설탄트㈜
금액	5,917,963,678	865,224,700	1,155,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현황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모아종합건설	㈜포스코이앤씨	㈜모아종합건설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6층 (범어동)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3층 (운암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죽도동)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3층 (운암동)
법인등록번호	110111-7238911	205911-0005185	174611-0002979	205911-000518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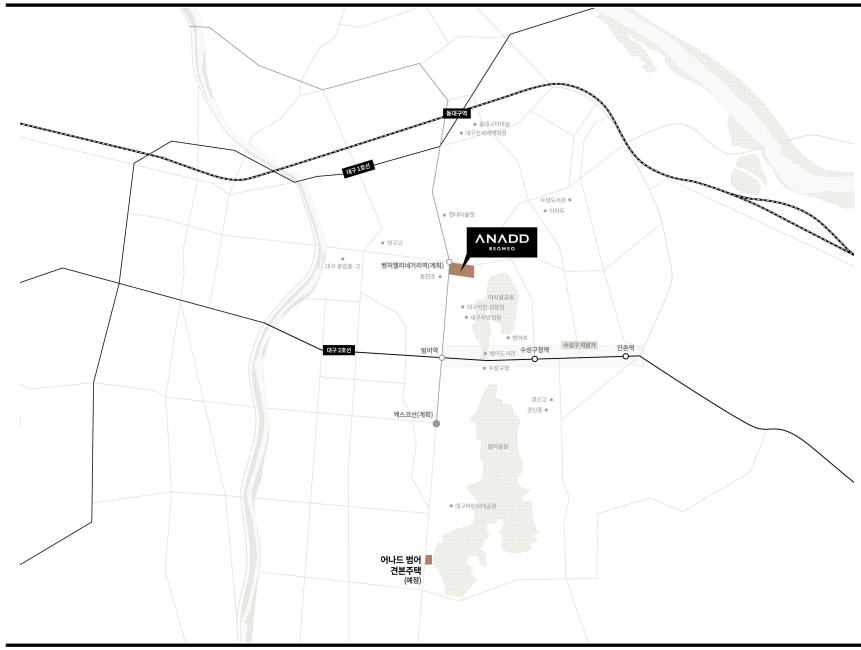

견본주택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0-1
운영시간	09:30 ~ 18:00
운영기간	분양종료 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1555-0604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nadd.co.kr